

예산총칙

2016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95,502,848	11,865,085
일반회계	352,277,254	10,568,318
특별회계	43,225,594	1,296,768
공기업특별회계	36,350,221	1,090,507
상수도공기업	14,756,905	442,707
하수도공기업	21,593,316	647,799
기타특별회계	6,875,373	206,261
의료급여기금운영	1,124,145	33,724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298,706	8,961
수질개선	492,900	14,787
농공지구조성사업	1,912,202	57,366
공영개발사업	423,386	12,70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10,655	3,320
주택사업	2,182,250	65,468
기반시설	17,846	535
장기미집행	313,283	9,398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984,5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포함)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1,865,085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